

4 부채 / 채무 / 채권

4-1. 통합부채 현황

■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17년	2018년	증감		
통합자산					
통합부채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colspan="2">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</td> </tr> </table>	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				
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					
유동부채					
장기차입부채					
기타비유동부채					

- ▶ '18년 결산 순계기준
- ▶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OO개로 공사·공단 OO개, 출자·출연 기관 OO개를 포함하고 있음
- ▶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- ▶ 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- ▶ 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- ▶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('19.10. 예정)

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-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.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.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대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7년	2018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,075,117	1,095,932	20,815	
부채(B)	19,055	17,495	△1,560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1.77	1.6	△0.17	

- 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- 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- 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: 해당 없음

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 : 해당 없음

4-5. 우발부채 현황 : 해당 없음

-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4-6. 지자체 채무 현황 : 해당 없음

■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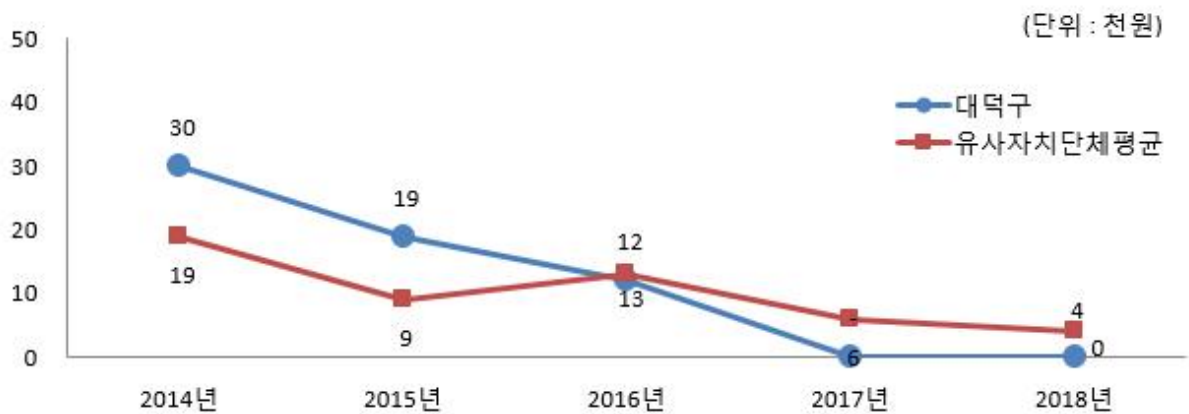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4	2015	2016	2017	2018
채무현황	6,050	3,700	2,350	-	-
인구수	201,558	196,839	192,688	186,902	181,991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30	19	12	-	-

※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

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4	2015	2016	2017	2018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,600	1,700	1,800	2,000	2,200
발행액(B)	-	-	-	-	-
발행비율(B/A*100)	-	-	-	-	-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- 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총족 차환액
 - ** 일정요건총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‘공공 및 기타대출’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4-8. 일시차입금 현황 : 해당 없음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

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: 해당 없음

-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

- BTL(임대형 민자사업)이란?

-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,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,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.

- BTO(수익형 민자사업)란?

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.

※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,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■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19~'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- ▶ *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('19.11.예정)*

4-11. 보증채무 현황 : 해당 없음

■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4-12. 채권 현황

-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 17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 18년도 현재액 (A+B)	
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	
합 계	3,070	13	13	0	3,083	
일 반 회 계	2,719	0	0	0	2,719	
기금 회계	소 계	351	13	13	0	364
	자활기금	351	13	13	0	364

- ▶ '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❖ 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4	2015	2016	2017	2018
채권현황	2,854	2,918	2,988	3,070	3,083

- ▶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

